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354
----------	------

제안년월일 : 2020년 2월 24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임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13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27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전입금”으로 변경하며,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에 지원해 온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2019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지원을 위해 운영했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례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이전의

조례 내용 및 형식으로 환원시키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조례 내용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함.

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이전의 조례 체계로 함.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관리·운영에 관하여”를 “관리·운영에”로 한다.

제1조의2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중전의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을 삭제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자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을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다른자치구”를 “다른 자치구”로, “대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추가하여 출연할 수 있다.”를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가. 공사관련 전입금

$$\text{전입금} = \frac{\text{간접영향권 주거용건축 연면적}}{\text{간접영향권 부지면적}} \times \frac{\text{자원회수시설의 용량(톤)}}{100(\text{톤})} \times \text{보전상수}$$

다만,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 내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항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출연”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연”을 “조성”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주민지원계정의 용도)”를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변영향지역내”를 “주변영향지역 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의2)의 제목“(주민지원계정 지원대상지역)”을“(기금 지원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계정”을 “기금”으로, “주민지원계정”을 “주민지원기금”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원회수시설소재”를 각각 “자원회수시설 소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회의”를 “해당 회의”로 한다.

3. 기금 총괄담당부서장

제9조(중전의 제7조)제1호 중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례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계정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계정결산”을 “기금결산”으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으로, “계정별로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잔액(예치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u>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회수관련시설”이란 자원회수 시설 및 수도권매립지를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p>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u> ----- <u>관리·운영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u>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u>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계정
-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계정

제2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제2조(자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 가. 공사관련 출연금

$$\text{출연금} = \frac{\text{간접영향권 주거용건축 연면적}}{\text{간접영향권 부지면적}} \times \frac{\text{자원회수시설의 용량(톤)}}{100(\text{톤})} \times \text{보전상수}$$

단,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나. ~ 라. (생략)

-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 3. 주민지원계정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4. 다른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추가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출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

<삭 제>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
-----.

- 1. ----- 전입금
- 가. 공사관련 전입금

$$\text{전입금} = \frac{\text{간접영향권 주거용건축 연면적}}{\text{간접영향권 부지면적}} \times \frac{\text{자원회수시설의 용량(톤)}}{100(\text{톤})} \times \text{보전상수}$$

다만,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 2. -----
----- 전입금
- 3. 기금 -----

- 4. 다른 자치구 -----
-----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② -----
----- 전입금

조성---

③ -----

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출연한다.

제3조(주민지원계정의 용도) ① 주민
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
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
용료·후생복지비 등 주민복지증진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② (생 략)

제3조의2(주민지원계정 지원대상지역)

① 주민지원계정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주민지원계정의 관리·운용) 시장은
주민지원계정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주민지원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
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주민지원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조성-----.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

1. (현행과 같음)
2. ----- 주변영향지역 내

3. -----

----- 제9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 지원대상지역) ① 기금-----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
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금-----

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2.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3. 기금총괄담당부서장
 4.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계정운용계획 협의 및 계정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 ④ (생략)

--- 주민지원기금 -----
-----.

제8조(협의회 구성) ① -----

-----.

1. 자원회수시설 소재 -----

 2. 자원회수시설 소재 -----

 3. 기금 총괄담당부서장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해당 회의 -----.

제9조(협의회의 기능) -----
-----.

1. 기금운용계획-----
2. 제4조-----

3. 기금-----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금운용계획 -----
기금결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삭 제〉

제9조(자금의 조성)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
개선계정”이라 한다)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하는 수도권
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
서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환경개선계정의 용도) 환경개선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11조(환경개선계정 대상지역) 환경
개선계정의 대상지역은 수도권매립
지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
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영)
시장은 환경개선계정 별도계좌를 설치
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환경
개선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
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21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
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삭 제>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기금총괄담당부서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 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생략)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
기금-----
----- 소속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8조제1항-----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기금운용 계획-----

-----.

② (생략)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규칙) -----
-----.